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춘천)2016누1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해시장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5035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2.
판 결 선 고	2017.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5,078,690원 중 45,414,4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308,860원 중 1,636,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960,640원 중 3,370,6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가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인장부에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쟁점비용을 '대기비용' 항목으로 반영한 사실, ② 실제로 원고는 2010. 4. 30. 변경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2012. 7. 24.자 변경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쟁점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비용이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 중 일부임은 일응 증명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이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금인 사실을 반증 또는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2, 25호증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갑 제4,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원고가 미리 대우건설과 공사계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을 체결하고 대우건설로 하여금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게 한 이유는 "2010. 11. 1.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석회석 운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조속한 착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

나. 이에 대우건설은 착공준비를 위해 16명을 최초로 현장에 투입하였고,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후에도 대략 14명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착공을 못 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 인원 수는 단순히 현장사무소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인원 수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달리 전부 현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대우건설은 위 대기기간 동안 위 인력을 활용하여 물류시설 관계자 간 협의, 주민설명회 준비, 인허가 업무(갑 제4호증 참조), 민원해결과 설계작업(갑 제13호증) 등을 해왔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적어도 2010. 1. 27.부터 위 인원의 급여 등에 대한 비용보상을 요구했다.

라. 더욱이 대우건설은 2010. 10. 5. 원고에게 "민원해결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당사 투입인원에 대한 기회손실비용 등 추가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력의 잔류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는데(갑 제15호증), 오히려 원고가 민원이 해결되면 신속히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위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1] 대우건설이 위 요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2010. 4.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0. 2. 16.부터 시설물 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대우건설 현장 정직원, 계약직원, 채용직원의 급여에 대해 간접노무비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 원고 제출의 2016. 10. 21.자 준비서면의 취지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민원해결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민원해결 시 즉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우건설이 현장 인력 및 필요 설비(현장사무소, 숙소)를 준비·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위 비용은 손해배상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른 대우건설의 용역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병규

판사 지창구